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824호 2022. 8. 16.(화)

www.gongju.go.kr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44
우)352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규 칙】

제633호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공주시의회 제634호 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8

【공 고】

제2022-163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3-1호 외 2개소) 공사 완료 19

제2022-168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1-46호) 공사 완료 21

【고 시】

제2022-14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4

제2022-144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27

제2022-14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9

2022년도 제9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22. 7.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2년 8월 16일

공주시 규칙 제633호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 등은”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 등 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갑, 을)”를 “정리보류표(갑,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한다.

제16조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결손처분)액”을 “(정리보류)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호(□) 중 “결손”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시효완성정리

별지 제1호서식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감액·결손**”을 각각 “**감액·정리보류 등**”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등)결정액**”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를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등)결정액 통지서**”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등**”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감액/결손**”을 “**감액/정리보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불납결손액**”을 “**정리보류 등 액**”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년시**”를 “**○○년도**”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과년시**”를 “**과년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연시**”를 “**연도**”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로 하며, 같은 서식 하단의 제2호 중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을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로, “**별지 제9호서식(을)**”을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결손처분표**”를 각각 “**정리보류표**”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결손처분여부”를 “정리보류여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2.8.11.)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의회의장 윤 구 병 인

2022년 8월 16일

공주시의회 규칙 제634호

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
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
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
법, 그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작성해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의 기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

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①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②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설치·분리와 합병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초과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선정인원의 수,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작성해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의장은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의장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대해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직급의 재직자를 지급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③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의 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초과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초과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② 의장은 제1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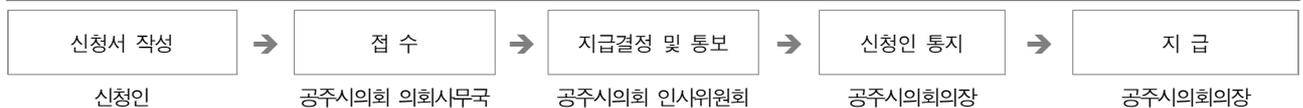
비고: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 외무·경찰·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급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고, 인사·연금·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표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에 따름			
소 속		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임기제 제외)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④직급·직무군 (호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조기퇴직원(「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1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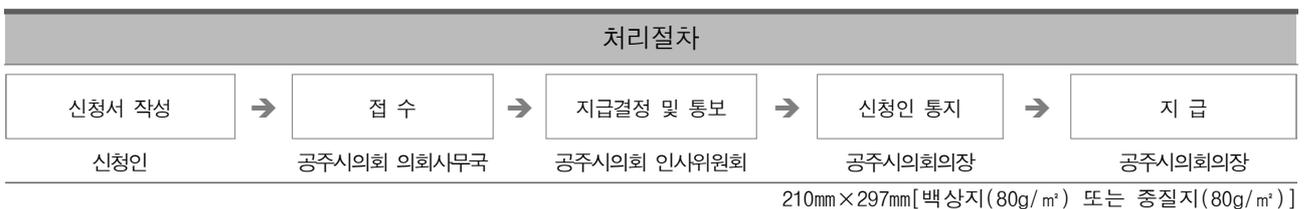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사무국장

직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비고 :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적고, 붉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공주시 공고 제2022 - 163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종로3-1호 외 2개소) 공사 완료 공고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도시계획도로 종로3-1호 외 2개소 개설공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 완료한 「유구읍 석남리(근화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 08. 16.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8-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로3-1호 외 2개소)
- 명 칭 : 유구읍 석남리(근화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 업 개 요
도시계획시설(도로 : 종로3-1호)	960㎡	○ 도시계획도로 개설 / L=70m, B=12m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6호)	500㎡	○ 도시계획도로 개설 / L=65.0m B=8m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3호)	345㎡	○ 도시계획도로 개설 / L=45m, B=8m

라.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도로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2021. 05. 31. ~ 2022. 06. 08.

바. 편입용지조서 : “붙임” 참조

편 입 용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유구읍 석남리	296-11	도	337	340	공주시	-	
2		296-10	도	109	109	국	-	
3		234-2	답	1,064	78	한○봉	충남 아산시 송악면 수곡길 ***	
4		235-2	답	863	331	한○봉	충남 아산시 송악면 수곡길 ***	
5		234-1	답	1,671	8	이○우 외 4인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	
6		440	구	3,621	66	국(농림축산식품부)	-	
7		235-1	답	440	46	차○호 외1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	
8		230-3	답	684	144	한○봉	충남 아산시 송악면 수곡길 ***	
9	유구읍 백교리	18-6	임	779	779	장진분	유구읍 백교리 ***	
10		9-7	답	22	8	박○준 외 5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2, ***	
11		10-11	답	4	4	윤○중	유구읍 석남리 ***	
합 계				9,594	1,913			

공주시 공고 제2022 - 168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종로1-46호) 공사 완료 공고

공주시 송선동 도시계획도로 종로1-47호 개설공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 완료한 「종로1-46호(송선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 08. 16.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송선동 고향칼국수 앞 ~ 종건소 사거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로1-46호)

- 명 칭 : 종로1-46호(송선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 업 개 요
도시계획시설(도로 : 종로1-46호)	10,889㎡	○ 도시계획도로 개설 / L=442m, B=24m

라.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도로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2020. 10. 06. ~ 2022. 06. 04.

바. 편입용지조서 : “붙임” 참조

편 입 용 지 조 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송 선 동	536-23	답	286	10	공유지	공주시					
2		642-48	천	2,492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3		536-18	도	58	12	국유지	국토교통부					
4		536-33	잡	27	21	공유지	공주시					
5		536-41	대	88	88	공유지	공주시					
6		549-2	답	681	567	공유지	공주시					
7		536-2	도	106	99	국유지	국토교통부					
8		549-4	도	251	232	국유지	국토교통부					
9		536-40	전	118	118	공유지	공주시					
10		706	도	1,993	1,693	국유지	국토교통부					
11		549-1	천	2,391	218	국유지	재무부					
12		550-1	차	188	188	이○주	송선리 550-4	장기농업 협동조합	장기면 도계리 162	근저당		
13		550-2	도	109	109	국유지	국토교통부					
14		550-3	도	69	69	국유지	국토교통부					
15		551-38	대	37	37	공유지	공주시					
16		551-14	도	116	116	국유지	국토교통부					
17		551-15	도	318	318	국유지	국토교통부					
18		551-39	전	738	738	공유지	공주시					
19		707	구	2,493	447	국유지	농축산식품부					
20		551-36	전	60	60	공유지	공주시					
21		551-35	전	87	87	공유지	공주시					
22		551-37	전	366	366	공유지	공주시					
23		553-9	장	258	258	공유지	공주시					
24		산59-24	도	195	195	국유지	국토교통부					
25		0-8	가	51	1	국유지	미등록지					
26		553-3	도	30	10	국유지	국토교통부					
27		553-4	도	45	45	국유지	국토교통부					
28		553-5	대	194	194	공유지	공주시					
29		554-13	도	3	3	국유지	국토교통부					
30		556-9	도	102	102	국유지	국토교통부					
31		산59-25	도	196	196	국유지	국토교통부					
32		551-40	잡	190	190	한국전 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빛가람동)					
33		458-57	임	34	19	공유지	공주시					
34		458-10	임	31	25	공유지	공주시					
35		0-7	가	35	35	국유지	미등록지					
36		458-56	대	366	366	공유지	공주시					
37		690	도	2,261	2,000	국유지	국토교통부					
38		554-34	답	82	82	이○주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88 2동 1201호					
39		554-33	답	453	453	공유지	공주시					
40		556-7	도	182	182	국유지	국토교통부					
41		556-13	도	370	370	국유지	국토교통부					
42		458-59	도	78	78	공유지	공주시					
43		458-58	대	402	402	공유지	공주시					
44		555	답	116	116	이○구	월송리					
45		554-32	전	47	47	공유지	공주시					
46		556-18	대	75	75	공유지	공주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7		556-26	대	198	190	공유지	공주시				
48		556-5	도	142	82	국유지	국토교통부				
49		554-25	전	2,047	91	국유지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282				
50		556-15	전	30	30	공유지	충청남도				
51		556-11	도	129	100	국유지	국토교통부				
52		456-5	도	1,813	75	공유지	충청남도				
53		456-4	대	11,216	6	공유지	충청남도				
54		554-35	답	22	22	공유지	공주시				
		계		34,465	11,653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8. 16.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길 82 외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08.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157-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길 82	2022 0816	신규	2010 0202	예전 의당리를 대표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길로 부여	고시 후 공문 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16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실길 54-6	2022 0816	신규	2010 0112	마을에 모래가 많아 사실길로 부여	
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597-33, 595-2, 597-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도예촌길 74-5	2022 0816	신규	2010 0112	도로의 끝자점에 도예촌이 있고 마을주민 모두가 도예촌을 향하는 길이라 인식, 도예촌길로 부여	
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114-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한내울길 40	2022 0816	신규	2010 0112	마을에 여울이 있다하여 한여울 또는 하내울이라 부른다 하며 평소 주민들이 부르는 한내울길로 부여	
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74-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수춘중앙길 46	2022 0816	신규	2011 0506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666-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오지울길 59	2022 0816	신규	2010 0202	옛날에 오지 그릇을 만들던 옹기점이 있었다 하여 오지울길로 부여	
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4-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월길 15	2022 0816	신규	2010 0112	마을 지형이 동이와 같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8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226-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안길 41	2022 0816	신규	2010 0112	내문리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내문안길로 부여	
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39-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167-28	2022 0816	신규	2010 0112	도로 끝 지점에 서당이 있다하여 서당의 명칭을 활용하여 서당길로 부여	
10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356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가척돌정길 190-40	2022 0816	신규	2010 0112	돌샘이 있다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1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13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330-20	2022 0816	신규	2010 0112	송곡리를 관통하는 주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138-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평촌길 34-1	2022 0816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1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340-4, 340-2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울속길 196-7	2022 0816	신규	2010 0112	울암이라 부르는 마을과 속계라고 부르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두 자연마을 명칭의 앞글자를 이용하여 울속길로 부여	
14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 14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고개길 154 (검상동)	2022 0816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후, 다른 지역과 중복 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을 첨가	
1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291-1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평정말길 9-5	2022 0816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1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23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온천사기소길 10	2022 0816	신규	2010 0112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분청사기를 만들던 곳으로 사기를 굽던 마을이라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후 행정구역 명칭 첨가	
17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화흥리 253-6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평화길 247-16	2022 0816	신규	2010 0112	평소리와 화흥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부여	
18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441-1	충청남도 공주시 반선말길 39 (봉정동)	2022 0816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9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589-7	충청남도 공주시 마근동길 63-4 (송선동)	2022 0816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0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610-64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문화로 2107-15 (웅진동)	2022 0816	신규	2009 0825	백제의역사 문화성 반영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 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8. 16.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144-13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08.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 적 장 부 주 소 전 환 계 획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변경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19, 119-1, 119-1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19-1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144-1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144-13	2022.08.04	건물번호 변경에 의한 관련지번 수 정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19, 119-1, 119-1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19-1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144-1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144-15	2022.08.04	건물번호 변경에 의한 건물번호 및 관련지번 수정			
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19, 119-1, 119-1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19-4, 119-1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144-1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144-17	2022.08.04	건물번호 변경에 의한 건물번호 및 관련지번 수정			
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19, 119-1, 119-1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19-1, 119-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144-1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144-21	2022.08.04	건물번호 변경에 의한 건물번호 및 관련지번 수정			
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19, 119-1, 119-1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19-1, 119-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144-1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144-24	2022.08.04	건물번호 변경에 의한 건물번호 및 관련지번 수정			
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19, 119-1, 119-1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19-1, 119-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144-1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144-23	2022.08.04	건물번호 변경에 의한 건물번호 및 관련지번 수정			
7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8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8	충청남도 공주시 흑수골길 6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94-3	2022.08.05	건물번호 합병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8. 16.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반선말길 41 (봉정동)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는 2022. 08.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세부내역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 지 고 시 일	폐지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441	충청남도 공주시 반선말길 41	2022 08.01	재건축에 의한 말소